

“경영 패러다임 전환과 변화를 통한 근본적 경영체질 강화”



우 5633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서면 석불로 80 / TEL(063)581-6322 / FAX (063)581-6323 / 담당자 : 하연우

문서번호 : 롯건새연 제 2026 - 98 호

시행일자 : 2026. 07. 08 .

수 신 : 건설사업관리단

참 조 :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번호		· 공 람		
	처리과				
	담당자				

제 목 : 안전점검(정기 및 초기안전점검) 전문기관 지정요청 제출의 건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제1공구)]

1. 귀 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에서 시행중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1공구)” 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에 따라 정기 및 초기안전점검 용역의 발주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 1) 공 사 명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1공구)
- 2) 공 종 명 : 안전관리비 /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비
- 3) 도급금액 : 808,577,594원(VAT포함)



- 불 임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세부실시 계획 1부.
3. 정기안전점검 도급금액 현황 1부.
4. 안전관리계획서 조건부 승인 공문 1부. “끝”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1공구

롯데건설 주식회사

현 장 대 리 인 한 광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 공 사 명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1공구		
2. 시 공 사	롯데건설(주) 외 9개사		
3. 발 주 자	새만금개발청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수성엔지니어링 외 3개사		
5. 공사개요			
공 사 비	310,395,000,000원(VAT 포함)	공사기간	2025.07.07. ~ 2030.09.03
현장주소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 내부간선#2와 순환링 접속부		
공사내용	총 연장 9.22km, B=24.0m, 교량 9개소(1,050m), 지상BOX 1개소(70m) 교차로 7개소(입체 2개소, 평면 5개소)		
6.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안전점검 내용	안전점검 세부실시 계획 참고 (정기안전점검 28회, 초기안전점검 4회)		
안전점검 비용	808,577,594원 (VAT 포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6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7월

현장대리인 성명

한 광 희

(서명)



새만금개발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신고인	→	접수	→	검토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수리	→	통보

210mm×297mm[백상지(80g/㎡)]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1공구] 안 전 점 검 세 부 실 시 계 획

1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개요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 목적물의 품질·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인접구조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검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 및 방법)

2 현장내 구조물 및 건설기계, 가설구조물 점검대상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시설물의 종류)

구 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교 량	도로 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한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 구조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나. 항타 및 항발기

6.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제101조의 2제1항)

- 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다.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설치
- 라. 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 가설구조물

3

점검대상 구조물 현황

대상구조물	구 조	(경간구성, m) /연장(m)	점검대상	비고
교 량 공	내부4-1교	개량형PSC BEAM	L=2@40=80m B=24.9m	100m이하
	내부4-2교	ST BOX+강아치교 + ST BOX	L=50+80+50=180m B=24.9m	1중
	내부4-3교	개량형PSC BEAM	L=4@45=180m B=24.9m	2중
	내부4-4교	개량형PSC BEAM	L=4@45=180m B=24.9m	2중
	내부4-5교	개량형PSC BEAM	L=2@40=80m B=24.9m	100m이하
	내부4-6교	개량형PSC BEAM	L=2@45=90m B=24.9m	100m이하
	내부4-7교	ST BOX거더	L=50+80+50=180m B=24.9m	1중
	내부4-교차로1교	합성형라멘 (ISP라멘)	L=1@40=40m B=21.4m	100m이하
	비득치교(확장)	개량형PSC BEAM	L=1@40=40m B=3.8m	100m이하
	내부4-지상BOX	RC BOX	L=70m B=28.4m	-

4

정기안전점검 점검횟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별표1)

건설공사 종 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교 량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하부공사 시공시	상부공사 시공시	-	-
건 설 기 계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천공 작업 말기 단계시	-	-	-
	항타 및 항발기	항타 · 항발기 조립 완료 후 최초 항타 · 항발 작업시	항타 · 항발 작업 말기 단계시	-	-	-
가 설 구 조 물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최초 설치 완료시	설치 말기단계시	-	-	-
	높이가 5미터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조립 · 설치 최초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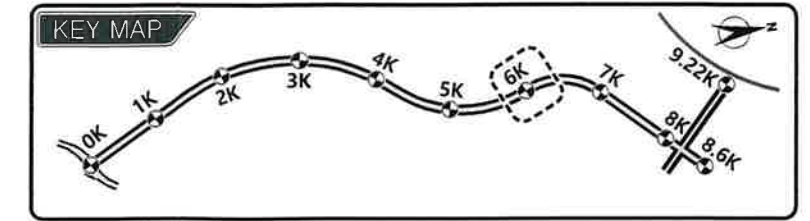
수립대상	항 목		차수	차수별 실시 시기	예정 시기
건설기술진흥 법시행령 제98조①의1	시특법상 1종 시설물 (내부4-2교)		1차	가시설 및 기초단계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2028.03
			2차	하부공사 시공시	2028.07
			3차	상부공사 시공시	2029.03
			초기	준공직전에 실시	2030.06
	시특법상 2종 시설물 (내부4-3교)		1차	가시설 및 기초단계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2028.10
			2차	하부공사 시공시	2029.01
			3차	상부공사 시공시	2029.06
			초기	준공직전에 실시	2030.06
	시특법상 2종 시설물 (내부4-4교)		1차	가시설 및 기초단계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2028.02
			2차	하부공사 시공시	2028.06
			3차	상부공사 시공시	2028.11
			초기	준공직전에 실시	2030.06
	시특법상 1종 시설물 (내부4-7교)		1차	가시설 및 기초단계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2028.01
			2차	하부공사 시공시	2028.04
			3차	상부공사 시공시	2028.08
			초기	준공직전에 실시	2030.06
건설기술진흥 법시행령 제98조①의5	천공기 사용 공사 (10m 이상)	RCD 파일천공기 (교량 교각부)	1차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2027.12
			2차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2028.12
		복합파일 천공기 (교량 교대부)	1차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2028.01
			2차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2029.01
		유압해머다짐 (액상화보강)	1차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유압해머다짐 작업시	2026.08
			2차	유압해머다짐 작업 말기단계시	2026.09
	항타기 사용 공사	교량 교대부 복합파일	1차	항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시	2028.01
			2차	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2028.03
건설기술진흥 법시행령 제98조①의 5의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교량 코핑외)		1차	최초 설치 완료시	2028.02
			2차	설치 말기단계시	2028.09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지상BOX)		1차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2028.04
			2차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2028.07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내부4-2교 교각, 비득치교 확장부 교대)		1차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2027.08
			2차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2027.11
	복합형가설구조물 (가설벤트 등) (내부4-2교)		1차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2028.10
			2차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2028.11

□ 안전점검 대상 추가사유

- 유압다짐공법 사용 장비(천공기, 10m이상) 안전점검 대상 누락
- 사유 : 설계도면 및 실시설계보고서에 사용장비로 천공기로 반영되어 있으나 검토중 누락
- ※ 첨부 : 관련도면 1식

관 련 도 면

액상화 보강계획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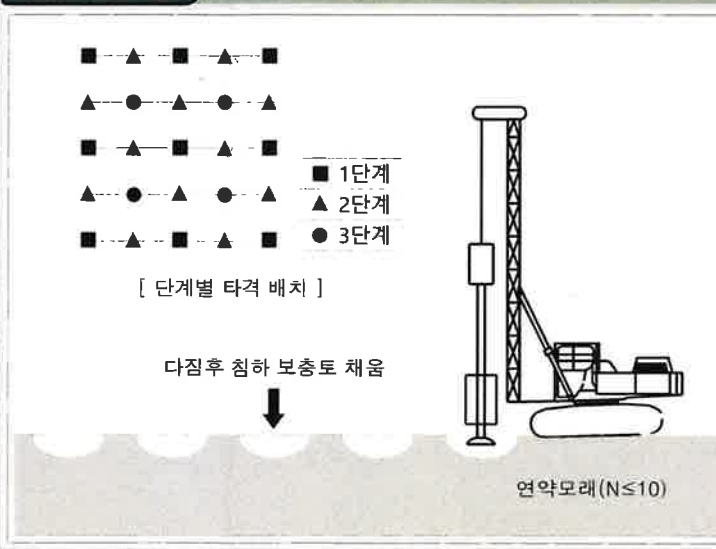
STA. 5+820~6+420



C-C' STA. 6+260



유압해머다짐



◆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시공순서	시공방법	시공순서	시공방법
1	지반정지 및 시험시공 위치 선정	6	시험시공 결과분석
2	타격지점 측량 및 표시	7	결과분석 반영 다짐계획 보완
3	시험시공 전 조사	8	본동다짐 실시(단계별 실시)
4	시험다짐 실시(단계별 실시)	9	본시공후 확인조사
5	시험시공 후 개량 확인 조사	10	결과정리 및 분석

◆ 확인시험

구 분	확인기준	비 고
시추조사	지층 확인	시공 후
표준관입시험	개량효과 확인	시공 후
간극수압측정	간극수압 발생량 및 소산시간 확인	휴지기간 결정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비 도급내역서

2026. 07.

내역서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합 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	1	PS		3,048,123,229						3,048,123,229	
안전관리계획 작성비		1	식	5,704,246	5,704,246					5,704,246	5,704,246 # 219	
안전관리계획 검토비		1	식	4,550,000	4,550,000					4,550,000	4,550,000 # 220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비		1	식	735,070,540	735,070,540					735,070,540	735,070,540 # 221	
CCTV 설치 및 운영(2대반영)	별도계상(스마트건설	1	식									
기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1	식	320,508,435	320,508,435	도입금액 : 808,577,594원(VAT포함)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별도계상		1	식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 223	
공사장 주변의 동행안전관리대책		1	식	1,531,433,396	1,531,433,396					1,531,433,396	1,531,433,396 No.67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별도계상(스마트건설		1	식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별도계상(스마트건설		1	식									
건설기계 및 기설구조물 점검		1	식	106,185,744	106,185,744					106,185,744	106,185,744 # 224	
스마트건설기술		1	식	232,100,000	232,100,000					232,100,000	232,100,000 GW07 # 20000	
근로자 휴게시설					62,570,868						62,570,868	
-1. 현장 근로자 휴게시설	48개월, 기설현막형	3	개소	17,986,956	53,960,868					17,986,956	53,960,868 No.68	
-2. 현장 근로자 화장실	48개월, 포세럼B형	3	개소	2,870,000	8,610,000					2,870,000	8,610,000 No.69	



수성엔지니어링

수신자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1공구) 롯데건설(주)

참 조 : 현장대리인

제 목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알림 및 후속조치 요청

1. 기반시설과-985(2026.06.24.)호 관련입니다.

2. 귀사에서 제출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1공구)”의 안전관리계획서가 발주처로부터 “조건부 적정”으로 승인되어 통보하오니, 불임과 같이 검토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공종 착공 전까지 보완조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 임 : 1. 발주처 공문 사본(기반시설과-985호, 2026.06.24.) 1부. 끝.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1공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박 정



담당자 김창중 상주기술인 오병훈 상주기술인 허광식 책임기술인 박정규

시행 수성감(1공구) 제2026 - 138호(2026. 06. 24.) 접 수

현장: 전북 부안군 하서면 석불로80

전화: 063-583-5005 / 전송: 063-583-5003 / <http://www.soosungeng.com> /



새만금개발청

수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박 정 규

(경유)

제목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알림 및 후속조치 요청

1. 건설안전관리실-10363호(2026.6.22.)와 관련됩니다.
2. 귀 단에서 제출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1공구)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건부 적정"으로 승인 통보하오니,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공종 착공 전까지 보완조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 회신(국토안전관리원) 1식. 끝.

새만금개발청



시설주사보

윤준집

기반시설과 파 전결 2026. 06. 24.

장

노유진

협조자

시행 기반시설과-985

(2026. 06. 24.)

접수 수성감(1공구)제2026-096

(2026. 6. 24.)

우 54004 전북 군산시 서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청

/ <http://www.saemangeum.go.kr>

전화번호 063-733-1181

팩스번호 063-733-1186

/ doondeep@korea.kr

/ 부분공개(5)

개인정보보호! 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안전한 국토, 국민이 안심하는 일상을 열어갑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수신 새만금개발청장(기반시설과장)

(경유)

제목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 회신[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1공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접수번호 SD-2026-04555검토 의뢰하신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5항에 따라 승인서 발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1공구)

나. 접수 완료일: 2026. 6. 11.

다. 검 토 의 건: “조건부 적정” ([붙임] 참조)

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한 후 적정, 조건부 적정의 경우에는 승인서(조건부 적정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 포함)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마. 참 고 사 항

- 1) (CSI 내 현장 확인법) CSI 로그인 → 안전관리계획서 → 1·2 중 검토의뢰 → 처리현황 조회 → 접수번호 입력 후 검색하기
- 2)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안전관리계획서[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1공구)] 검토 의견서 1부. 끝.



차장	이상범	차장	2026. 6. 22.	실장	전결
협조자		이지명			
시행	건설안전관리실-10363	(2026. 6. 22.)	접수	기반시설과-968	(2026. 6. 23.)
우	52856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16. 5층(충무공동, 휴니온팜)	/ https://www.kalis.or.kr/		
전화번호	055-771-1437	팩스번호	055-771-1456	/ sy94940@kalis.or.kr	/ 비공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견서 [신규]

검 토 현 황	신규검토[✓] 재검토[] 변경검토[]
공 사 명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1공구)
시설물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종합검토의견	조건부 적정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주 요 내 용
① 총괄 안전관리계획		
가. 건설공사의 개요	조건부 적정	설계도면 제출 보완
나. 현장 특성 분석	조건부 적정	주요매설물 관련사항 등 보완
다. 현장 운영계획	조건부 적정	안전활동계획표 등 보완
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조건부 적정	비상복구자재 관리계획 등 보완
②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가. 가설공사	조건부 적정	비계 안전성 계산서 등 보완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조건부 적정	흙막이 안전성 계산서 날인 등 보완
다. 콘크리트공사	조건부 적정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성 계산서 등 보완
라. 강구조물공사	조건부 적정	가설벤트 안전성 계산서 등 보완
마. 성토 및 절토공사	조건부 적정	가우후의 토사붕괴 방지대책 등 보완
바. 해체공사	-	해당사항 없음
사. 건축설비공사	-	해당사항 없음
아.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	해당사항 없음

[첨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내용

국토안전관리원장

직인 생략

[첨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견서 · 확인서 양식 변경 알림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 확인서 양식 변경(재검토 차수부터 적용)

- 검토의견서 양식 상이 및 서명 누락할 경우 반려 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변경 작성 필요
- CSI-안전관리계획서-1·2종 시설물 검토-안전관리계획서 검토-감리/발주청 확인-검토·확인서 양식-안전관리계획서 검토·확인서(양식,sample) 참조.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2026.02) 변경 작성 방법 안내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매뉴얼(2026.02) 변경되었으니 작성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SI-안전관리계획서-1·2종 시설물 검토-안전관리계획서 검토-공지사항-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2026.02)(양식,sample) 참조.

1 총괄 안전관리계획

가. 건설공사의 개요

1) 설계도면 보완

- 구조물도(교량 등) 제외한 종평면도, 배수공, 포장공, 부대공 등 제출 보완

나. 현장 특성 분석

1) 현장 여건 분석

- 공사현장 주변 영향범위 내에 매설되어 있는 주요 매설물 관련 사항 보완

- 가스배관, 통신선로, 전기선로, 상·하수도, 우수관 등 관리주체별 주요 매설물의 종류(규격, 재질), 위치(연장, 매설깊이) 등이 포함된 매설물 현황을 굴착 평·단면도에 표기
- 매설물 관리주체와의 협의사항 자료 첨부 보완(매설물별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 시공자가 사전에 협의 완료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각 교량의 교대·교각부 기초터파기 공사부 인접 영향범위 내 관리주체별 주요 매설물의 종류(규격, 재질), 위치(연장, 매설깊이 등) 등이 포함된 매설물 현황을 굴착 평·단면도에 표기

※ 예) 회신 공문 또는 날인된 회의록

※ 지장물은 공사예정 부지에 편입된 지장물 뿐만 아니라 공사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범위 내에 위치한 모든 지장물의 표기가 필요

다. 현장은영계획

1)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 7]에 따라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보완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별표 8]의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비용(000, 000, 000 등)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조정 산출(1회 비용이 과다한 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 요함)
- ※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도급내역서, 계약서, 계약조건 등이 수록되지 않아 정확한 순공사비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기안전점검 비용 등 안전관리비 ‘항목별 금액’은 도급계약 당사자인 건설회사 및 발주자가 과다, 과소 편성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사항

- ※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의 도입·활용 확산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24.03)하였으며,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www.kalis.or.kr → 기술 정보 → 기술자료실)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 건설안전 라이브러리 >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이드라인은 참고용으로서 준용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안전활동계획표

- 자체 및 정기안전점검 일정, 건설기계 반·출입 등 공정표에 작성 보완

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1) 외부 비상연락망

- CSI 건설사고 신고 추가 보완

2) 비상복구장비 및 자재 관리계획 수립

-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분출할 수 있도록 보관 장소를 비상대피도면에 표기하고, 관리담당자를 복수(예: 정-관리과장, 부-작업반장)로 지정하여 명기

3) 사고유형에 따른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수립

- 붕괴·전도·화재·폭발, 이상기후(폭염·폭우·한파·폭설·강풍)등 기술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예방계획 및 피해최소화 방안 수립

②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가. 가설공사

☐ 안내사항

틀비계, 달비계, 리프트, 곤돌라, 가설전기, 가설울타리, 출입구, 낙하물방지망 등은 타기관 승인검사 또는 중복 검토 등의 사유로 검토항목에서 제외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업무 간소화)

1) 가설비계

○ 비계 설치개요서 분야별책임자 등 내용 작성

○ 비계의 안전성 계산서 및 시공 상세도면 보완

- 비계의 수평연결재, 가새재, 벽 연결재의 안전성 검토는 풍하중에 대한 영향과 연직 하중의 5%에 해당하는 수평하중의 영향을 고려해야함.(단 수평하중과 풍하중의 동시 작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 비계의 안전성 계산 시 풍하중 산정은 작업중지 풍속이 아닌 지역별 기본풍속 적용 필요
- 비계 설치 계획도(평면도, 입·단면도 등)
- 구조 검토에 따른 비계의 시공 상세도면(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벽이음 간격 및 연결 이음쇄 상세 등 표기)
- 비계의 침하방지조치, 벽이음 재료 및 이음방법
- ※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5항 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7]에 따라 작성된 안전성 계산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참여기술인)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첨부 필요
- ※ 시공 상세도면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작성자 및 검토자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 구조 검토서의 개략도는 시공 상세도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구조물 도면에 치수를 기재 하여 작성 필요
- ※ 시공 상세도면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시공 상세도 작성지침」 제5장 시공 상세도 작성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워킹타워 안전관리계획 보완 (안전성계산서, 시공 상세도면, 안전점검표 등 포함)

○ 공공공사의 경우 강관비계를 시스템 비계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안전성 계산서 및 시공 상세도면 작성

-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2019. 4.)’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시스템 비계를 의무적으로 설치 필요
- ※ 건설기준코드(가설코드-설계기준, 표준시방서)의 구조안전성 검토 절차를 참조하여 검토 실시
- ※ 현지 여건(비정형 구조물, 복잡한 구조형식 등)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 강관비계의 조립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함

2) 가설도로

○ 가설도로 설치개요서 분야별책임자 등 내용 작성

○ 가설도로의 평면도, 종단면도는 계획 홍수위,우천시 철거등을 고려하여 작성

- 가설도로 종단면도에 해당 선형에 따른 지반고, 종단계획고 및 계획 홍수위를 명시
- 각 교량공사 구간의 가설도로 평면도에 기존하천의 흐름을 위한 가배수관 계획 등 포함

3) 가설교량

- 가설교량 설치개요서 분야별책임자 등 내용 작성
- 가설교량의 설치 및 해체순서 등이 상세히 표시된 시공 상세도면 추가
- 자체안전점검표(Hold Point) 작성

4) 가설장비

※ 당 현장에서 사용계획중인 가설장비는 ‘가설공사’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타 공종(ex.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콘크리트공사 등)에 작성했다라도, 적합한 공종에 수립하여 보완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식 크레인(규격별(톤) 모두)

- 배치/양중계획 보완(양중자재의 최대중량, 작업반경을 고려한 인양장비 배치도, 부재위치 작성)
 - * 최대 인양하중 표기
 - * 작업반경·높이, 붐 길이 등에 대한 치수를 당 현장의 평·단면도상에 표기(스케일 준수)
- 당 현장에 투입될 이동식 크레인의 용량별 제원 보완
 - * 크레인 제원상에도 작업반경, 붐 길이, 인양하중 표기
- 장비·인양하중, 지내력에 따른 전도안전성 검토
- 인양고리 및 와이어로프의 안전성 검토 등 기타 안전관리계획 수립 보완

○ 천공기(높이 10m 이상)

- 굴착깊이를 고려한 천공기(높이 10m 이상), 향타 및 향발기의 진출입로 설치 계획(장비 전도방지를 고려한 진출입로 폭, 경사도 등 수립 필요)
- 천공기(높이 10m 이상), 향타 및 향발기의 시공 순서에 따른 배치계획(자재 야적계획 포함) 보완(도면에 표현)
- 향타기 및 천공기 주기 시(주차 or 일작업 마감 시) 안전관리대책 수립 (리더부 수직도 검사, 아웃리거 설치, 케이싱 근입, 폭풍 시 대책 등)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1) 굴착공사, 흙막이공사의 개요서 분야별책임자 등 내용 작성

2) 흙막이 안전성 계산서 작성자 날인 보완

○ 각 교량별 안전성 계산서 작성자 날인 보완

-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 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7에 따라 작성된 안전성 계산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참여기술인)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첨부 필요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에 따라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고, 가설구조물의 시공 전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와 관계전문가(기술사)에게 확인(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구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됨.

☐ 안전성검토서 제출현황

(안전성검토서 제출 공중은 아래표와 같이 요약표 작성) “검토 시 지우기 바랍니다”

구분	비계		흙막이		비고
	비계	워킹타워	교대(본체)	교각	
내부4-1교			X	X	개량PSC빔 2@40=80
내부4-2교	^O (금회, 최초)		X	^O (금회, 최초)	강BOX+강아래 3@80=180
내부4-3교			X	X	개량PSC빔 4@45=180
내부4-4교			X	X	개량PSC빔 4@45=180
내부4-5교			X	X	개량PSC빔 2@40=80
내부4-6교			X	X	개량PSC빔 2@45=90
내부4-7교			X	X	강BOX+강아래 3@80=180
내부4-교차로교			X	X	합성형라멘 1@40=40
비독치교확장			^O (금회, 최초)	X	개량PSC빔 1@40=40
내부4-자상BOX			X	X	RC BOX L=70

다. 콘크리트공사

■ 안전관리계획서 보완사항

☐ 안전성검토서 제출현황(암거)

구분	동바리		벽체 거푸집	알폼	합벽	전이구조물			중차량 이동 하부 슬래브	갯 품	C P B	E/V 최상층	데크 플레이트	비고
	시스 템	파이프				지지 슬래브	보 축압	전단 보강						
안전성 검토서				X	X	X	X	X	X	X	×	X	X	

※ 해당사항 없음(×) / 대상공사 제출(O), 대상공사 미제출(-)

1) 콘크리트공사의 개요서 분야별책임자 등 내용 작성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시기에 대한 안전·품질관리계획 수립 보완

-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와 시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구분 작성

☐ 권고사항

-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거푸집 해체를 위해 양생기간을 단축할 경우 반드시 콘크리트 강도(타설 부위와 동일한 조건에서 보관한 공시체로 확인)가 확보되어야 함

3) 시스템 동바리가 설치되는 구간에 대한 구조 안전성 검토결과를 반영한 시공 상세도면 보완

- 구조 검토한 대표구간 전체에 대해 설치되는 장선, 명에, 동바리 간격 등을 한 표로 정리하여 보완
 - 공사관계자가 구조 계산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 필요
- 동바리 시공 상세도면은 구조 안전성 검토구간별 평면, 종·횡단면도(X, Y방향)로 작성
- 수직재 · 수평재 · 가새 등의 간격, 구조체와의 이격거리 등에 대한 치수 표기
- 시스템동바리 설치도면에 버팀대(또는 수평연결재) 시공 상세도 추가
- 가새재는 기성품 가새재와 단판 가새재를 구분하여 시공 상세도면에 표기 보완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에 따라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고, 가설구조물의 시공 전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와 관계전문가에게 확인(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구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됨.
 - ※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5항 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7에 따라 작성된 안전성 계산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참여기술인)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첨부 필요
 - ※ 시공 상세도면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작성자 및 검토자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 구조 검토서의 개략도는 시공 상세도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구조물 도면에 치수를 기재하여 작성 필요
 - ※ 시공 상세도면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시공 상세도 작성지침」 제5장 시공 상세도 작성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파이프 동바리가 설치되는 구간에 대한 구조 안전성 검토결과를 반영한 시공 상세도면 보완(해당시)

- 구조 검토한 대표구간 전체에 대해 설치되는 장선, 명에, 동바리 간격 등을 한 표로 정리하여 보완
 - 공사관계자가 구조 계산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 필요
- 설치구간 중 양방향 수평연결재 보강이 필요한 구간은 상세도면상 표기하여 첨부
 - 동바리의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명시
 - ※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5항 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7에 따라 작성된 안전성 계산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참여기술인)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첨부 필요
 - ※ 시공 상세도면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작성자 및 검토자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 구조 검토서의 개략도는 시공 상세도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구조물 도면에 치수를 기재하여 작성 필요
 - ※ 시공 상세도면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시공 상세도 작성지침」 제5장 시공 상세도 작성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높이 5m 이상 벽체 거푸집의 전도, 측압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관련시공 상세도면 및 콘크리트 타설 계획 보완

○ 상세도 작성 시 경사 버팀대 규격, 설치위치·간격, 고정상태(앵커 규격) 등 포함

권고 사항

- ❖ 콘크리트 타설시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거푸집 해체를 위해 양생기간을 단축할 경우 반드시 콘크리트 품질(강도 : 현장 동일 조건에서 보관한 공시체) 확인 후 계획 강도 이상 일 때 해체작업을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부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확대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5 MPa 이상(내구성 중요한 경우 10 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단층구조의 경우	설계기준압 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14 MPa 이상
	다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제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 교량

1) 교량 상부구조 공사 안전시공계획 보완

○ 거더 양중계획(인양장비 배치도, 부재위치)이 포함된 구체적인 안전시공계획 추가

○ PSC I형거더교 전도방지 계획

- 거더 전도에 대한 안전성 검토
- 거더 제작, 운반, 인양·거치 단계별 전도방지계획(전도방지시설, 운반로, 제작장)
- 전도방지시설별 설치시기 및 해체시기 명시

※ 전도방지시설이 사고 등의 영향으로 현장여건 상 제출된 계획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공계획서에 전도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승인 후 공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교량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의 안전성 계산서 및 조립도(시공 상세도면) 보완

○ 각 교량별 교대 벽체, 날개벽의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성 계산서와 조립도 보완

- 벽체 거푸집 조립 상세도는 계산결과에 따른 1회 타설높이, 타설속도, 지지공법, 거푸집 측압 등을 추가하여 보완
- 벽체 거푸집의 측압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여 보완
- 경사구간의 시스템 동바리(교대 날개벽 등)는 경사에 의한 반력을 구조해석에 추가하고, 동바리 하부층 지지(수직재 미끄러짐 방지 등)를 위한 시공 상세도(설치 계획도)를 작성
- 날개벽 동바리 하단은 지반에 위치하므로 지반 지지력 확인 및 해당 지지력 확보 방안(다짐 또는 콘크리트 타설 등)을 수립하여 보완

○ 각 교량별 교각 Pier Form, Coping Form의 안전성 계산서와 조립도 보완

- Pier Form, Coving Form 등은 치수선 및 각 부재의 제원을 명시한 재료표 등추가
- 치수화하여 해당 구조물 도면에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

○ 거더 횡단곡 관리 방안 및 횡단곡에 의한 가설 중 및 거치 후의 전도발생 가능성을 검토

○ 슬래브 거푸집 및 동바리의 안전성 계산서 및 이에 따른 조립도 보완

○ 캔틸레버부의 거푸집 및 동바리의 안전성 계산서 및 이에 따른 조립도 보완

- 캔틸레버부의 거푸집 동바리 안전성 계산서는 상부 슬래브 하중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시공 중 작업자 작업 및 자재 적치를 위한 여유공간' 도 고려하여 계산서 작성

- 캔틸레버부 조립도는 시공 중 작업자 작업 및 자재 적치를 위한 여유공간 및 안전난간 등을 포함

3) 동바리 하단이 지반에 위치하는 경우 지반 지지력 확인 및 해당 지지력 확보 방안(다짐 또는 콘크리트 타설 등)을 수립하여 보완(공통 사항)

○ 교량 기초 외측 슬래브 하부, 교량기초 외측 날개벽 하부, 옹벽 전면부 지반 등

○ 각 교량의 구간별 안전성 계산서, 조립도의 제출 현황을 알 수 있는 제출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첨부

※ 구조검토 대상 선정 근거(규격 등) 첨부 필요

교량 구분	교대		피어	교평	슬래브 동바리	슬래브 (거더식)		비고
	벽체 거푸집	날개벽 동바리				중양부	캔틸레버부	
내부4-1교					X			개량PSC빔 2@40=80
내부4-2교	○ (금회최초)	○ (금회최초)	○ (금회최초)	○ (금회최초)	X		○ (금회최초)	강BOX+강아치 3@80=180
내부4-3교					X			개량PSC빔 4@45=180
내부4-4교					X			개량PSC빔 4@45=180
내부4-5교					X			개량PSC빔 2@40=80
내부4-6교					X			개량PSC빔 2@45=90
내부4-7교					X			강BOX 거더 3@80=180
내부4-교차로1교			X	X				합성형라멘 1@40=40
바둑치교(확장)			X	X				개량PSC빔 1@40=40
내부4-자상BOX			X	X		X	X	RC BOX L=70

※ 해당사항 없음(×) /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 미제출(-)

라. 강구조물공사

- 1) 강구조물 공사의 개요서 분야별책임자 등 내용 작성
- 2) 강구조물 공사를 위한 가설계획에 따른 안전성 계산서 추가(가설벤트 등)
- 3) 강구조물 시공시 달대비계 안전성 검토 필요
- 4) 데크플레이트 안전관리계획

○ 데크플레이트 안전성 검토 실시

- 콘크리트 타설높이가 0.5m 미만의 경우 작업하중 2.5kN/m^2
- 콘크리트 타설높이가 1m 미만의 경우 작업하중 3.5kN/m^2
- 콘크리트 타설높이가 1m 이상의 경우 작업하중 5.0kN/m^2

※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KDS 21 50 00) 참고

○ 강구조물 보와 데크플레이트 접합부 상세도면 보완

마. 성토 및 절토공사

- 1) 성토 및 절토공사의 개요서 분야별책임자 등 내용 작성
- 2) 강우 후의 토사 붕괴(토사 유실 등) 방지대책 추가

※ 안전관리계획서 보완(변경)사항은 보완(변경) 전/후를 명확히 비교 검토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시어 검토의뢰 하시기 바랍니다.(기제출 자료 첨부 제외)

□ 안전관리계획 수립 챗봇 서비스 운영 안내

안전관리계획서 Chat bot 민원응대 채널오픈!



검색창에 '안전관리계획서 365(KALIS)
검색

QR코드로 간편하게 친구추가하세요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대상 과 검토의뢰 절차
절차에 한정하여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웹사이트 접속 주소 : http://pf.kakao.com/_jxkvEn

- ※ 국토안전관리원은 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이 답변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 ※ 일부 답변에 대하여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채널 개선사항 및 추가 질의응답이 필요하신 경우 채널 만족도조사 참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별 사실 내용에 대한 별도의 참조 자료 및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긴급복구 공사 신속검토 운영 안내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업무수행 지침(지침 제326-5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긴급복구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신속 검토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입니다.
- 긴급복구 공사 대상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2호 국가 핵심기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복구 건설공사
 - 3) 공공 발주현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서 정의하는 자연재난 복구 공사 현장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나목에서 정의하는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시설물 및 구조물이 붕괴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복구공사가 요구되는 현장
- 신청 방법
CSI를 통한 신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뢰 시 의뢰개요 - 긴급복구 신속검토 대상여부의 해당 있음 체크후 해당사유 선택, 비고란에 신속검토 필요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관련 안내사항 참조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공지사항 - 안전관리계획서

□ 안내사항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검토결과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 후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중 건설공사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곤란한 공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7]의 단서조항에 따라 해당공종 착공 전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서 내에 '해당공종 착공 전에 제출' 계획 등을 명시하면 우리 관리원은 해당공종에 대해 '검토 미의뢰'로 회신합니다. ('검토 미의뢰'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 적정'에 해당하고 해당공종의 착공 전까지 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예) 본 OO 공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7] 1.일반기준에 따라 해당 공종 착공 전 제출 하여야 함
-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도급내역서, 계약서, 계약조건 등이 수록되지 않아 정확한 순공사비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정기안전점검 비용 등 안전관리비 '**항목별 금액**'은 도급계약 당사자인 **건설회사 및 발주자**가 과다, 과소 편성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과 CSI 공지사항에 **게시**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기준 및 검토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안전기준** 부적합 및 제작결함 등의 사항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안전관리계획서는 수정·편철이 용이하도록 바인더로 관리하여 안전관리계획서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계획서에 반영하고, 안전점검은 해당 실시시기에 실시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안내문

- 공정한 검토를 위해 검토결과 회신 전 **검토자 비공개, 순차적 검토(접수일 기준)**를 원칙으로 하며, 검토결과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안전관리원 직원은 어떠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향응 또는 편의를 제공받지 않습니다. 아울러 관리원 직원에게 부정청탁이나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7]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 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매뉴얼”
- “국가건설기준” (국가건설기준센터 고시)

□ 권고사항

○ 본 검토 내용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시한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다음 건설기준코드를 준수하여 안전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 가설공사

KDS 21 60 00 : 2020(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KCS 21 60 00 : (비계 공사) 및 KCS 21 70 00 : (안전시설공사), KCS 21 20 00 : (공통가설공사), KDS 21 45 00 : (가설 교량 및 노면 복공 설계기준), KCS 21 45 00 :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 굴착 및 발파공사

KDS 11 00 00 : (지반 설계기준), KCS 11 00 00 : (지반공사), KDS 21 30 00 : (가설 흙막이 설계기준), KCS 21 30 00 : (가설 흙막이 공사), KDS 11 10 15 : (지반계측), KCS 11 10 15 : (시공중 지반계측), KDS 21 45 00 :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 설계기준), KCS 21 45 00 :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KCS 21 20 10 : (건설지원장비), KCS 11 20 00 : 8 (토공사)

- 콘크리트공사

KDS 21 50 00 :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 KDS 14 20 00 : (콘크리트구조 설계), KDS 14 20 62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00 : (콘크리트공사), KDS 11 80 00 : (옹벽설계기준), KCS 11 80 00 : (옹벽공사)

- 강구조물공사

KDS 14 30 05 : (강구조설계(허용응력설계법), KDS 14 31 00 : (강구조설계(하중저항계수설계법), KCS 14 31 00 : (강구조공사)

- 성토 및 절토공사

KDS 11 70 00 : (비탈면 설계기준), KCS 11 20 00 : (토공사), KDS 11 80 00 : (옹벽설계기준), KCS 11 80 00 : (옹벽공사)

- 교량공사

KDS 24 00 00 : (교량설계기준), KCS 24 00 00 : (교량공사), KDS 21 30 00 : (가설 흙막이 설계기준), KCS 21 30 00 : (가설 흙막이 공사)

※ 상기 건설기준코드 외에 누락된 설계기준코드, 표준시방서코드는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코드’를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